

2016년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지침

I. 보수교육

가. 보수교육 이수시간

(1) 이수 기준 및 미이수 시 추가 이수

- 연간 8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8시간 미만 교육 이수자는 당해 연도 보수교육 미이수로 처리함
-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전년도의 미이수로 발생한 보수교육을 당해 연도 또는 이후 추가 이수는 허용되나, 당해 연도 8시간 이상 받은 보수교육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는 않음

나. 보수교육 실시

- 보수교육은 의료법을 준용하여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 총괄 관리하되,
 - *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의료법에 따른 중앙회는 아니지만, 우리부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으로 의료인/의료기사가 중앙회 및 협회에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협회에서 실시
- 내실있는 보수 교육을 위해, 집체교육시 협회에서 직접 실시하는 비율보다 전문단체, 의협, 병협, 중병협 등에 위탁 실시하는 비율을 높게하여 운영
 - * 간호조무사는 다양한 기관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기관 특성에 맞게 보수교육을 운영하도록 위탁실시 활성화
- 간호조무사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시 해당 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수교육 시간으로 인정하되, 협회와 사전에 협의 후 인정
- 간호조무사가 보수교육 신청시, 어떠한 경우(협회비 미납 포함)에도 보수교육을 제한할 수 없음

다. 보수교육 이수증 발급

(1) 협회장은 간호조무사가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보수교육 이수증 발급

* 협회비 납입 여부와 연계할 수 없음

라. 보수교육 면제·유예 대상

(1) 취지

- 기존의 보수교육 면제대상자를 보수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면제 대상 및 유예대상으로 구분

(2) 보수교육 면제 대상(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6항 준용)

- 당해 연도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재발급자는 제외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3) 보수교육 유예 대상(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7항 준용)

- 해당 연도에 6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

* (보수교육 유예 대상자) :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나, 특정 사정(질병 등)으로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유예를 원하는 자임

(4) 보건복지부장관의 보수교육 면제·유예 인정 절차

- 간호조무사가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협회에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

* 관련서류 예시 : 간호조무사 자격 발급 신규자(자격증 사본)

-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은 당해 연도에 한하므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매년 면제·유예 신청을 해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협회에서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회신된 문서를 근거로 보수교육 면제·유예 대상자를 분류함
- 협회장은 면제·유예 대상자임을 확인한 때,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함

마. 보수교육 비용 및 수수료 산정

(1) 보수교육 비용은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실비*를 부과

- * 보수교육 실비: 교육 직접비용(강사료, 교재비, 교육장소 임차료 등)과 간접비용(보수교육 부서 운영비, 보수교육 상근담당자 인건비 등)을 일컬음

△ 협회 회비와 연계하는 방식은 모두 불인정

△ 협회비 미납 회원에게 보수교육 간접비*에 대해서만 추가 부과 가능

- 보수교육 직접비는 협회비 납부회원과 미납회원 간에 동일*하게 부과 하되, 간접비는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미등록회원에게 추가 부과 가능

- * 협회비 납부 회원에게 보수교육 직접비를 할인하는 방식 등을 포함하여 직접비를 차등하는 것은 모두 불인정함

- 보수교육 비용의 산정 내역 및 비용을 중앙회 홈페이지에 게시

(2)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 시 별도 수수료 비용 책정 불가

(3)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 발급 시 별도 수수료 비용 책정 불가

II. 행정사항

가. 시도

- 시도지사는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보수교육 관리 철저

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1) 보수교육 내실화 등

- (보수교육 강화) 감염예방, 의료법령·의료윤리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관련단체는 보수교육 강화

- (아동학대 신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교육 과정에 포함시켜 간호조무사의 아동학대 신고율 제고(아동복지법)

* 신고전화 1577-1391(전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 (회당 교육인원 제한) 1회 최대 교육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하여 보수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

(2) 보수교육 계획 및 실적 보고 : 보건복지부, 시도

○ 보수교육 계획

- 보수교육 실시기관, 교육과목 및 내용, 교육방법(집합·사이버 등), 교육 예산 및 피교육자 경비 부담액 등 작성
- 연중 보수교육계획은 각 협회 보수교육 홈페이지에 별도 메뉴로 구성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연중 게시

○ 보수교육 실적 보고

- 보수교육 이수자 수, 당초 제출한 계획 대비 변경사항 등 전년도 보수교육 운영 결과를 매년 4월말까지 제출

(3) 유의 사항

○ 보수교육 비용을 협회 예산과 분리하여 구분 계리

○ 기타 유의사항

- 시도, 병(의)원과 협조하여 의료기관 근무자에게 리플렛 배포
- 보수교육시 협회비 납부를 유도·강요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협회 본부는 지회·분회 등이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
- 보수교육비용을 등록 회원 및 비등록 회원과 차등하여 징구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

< 주요 부당 운영 사례 >

- 온·오프라인 보수교육 이수 및 보수교육 이수증 발급을 협회 회원 여부, 회비 납입 여부와 연계하는 방식
- 보수교육 면제 신청 시 회원 여부에 따라 별도 비용 부과
- 타 지부 보수교육 수강 희망 시 별도의 비용이나 절차를 요구 행위
- 보수교육 실시일의 임시 휴일 지정

(4) 문의 사항

- 보수교육 이수 관련 문의를 전담할 수 있는 협회 내 직통 콜센터를 운영할 것을 권장함